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11. 12 선고 2019가단5206547 판결 [공사대금 등 청구의 소]

전 문

원 고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참본

담당변호사 이상철, 이영수

피 고 1. 주식회사 B

2. 의료법인 C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반우

담당변호사 황성하

변론 종결 2020. 10. 15.

판결 선고 2020. 11. 12.

주 문

1. 피고 주식회사 B은 원고에게 59,943,3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0.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 의료법인 C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B 사이에 생긴 부분은 위 피고가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의료법인 C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N

청 구 취 지

주문 제1항 및 피고 의료법인 C은 피고 주식회사 B와 공동하여 원고에게 22,443,3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분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 관계

피고 의료법인 C(이하 '피고 재단'이라고 한다)은 피고 B 주식회사(구 상호 D 주식회사, 이하 '피고 회사'이라 한다)에게 서울 노원구 E 소재 F요양병원 증축공사(이하 '이사건 증축공사'라 한다)를 도급한 재단이고,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위 신축공사 중 전기공사를 하도급한 회사이다.

나. 피고 재단의 요양병원 별관 신축공사의 도급

피고 재단은 2018. 5. 9. 피고 회사에게 이 사건 증축공사를 공사대금 935,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준공예정일 2018. 10. 15.까지로 정하여 도급하였다.

다. 피고 회사의 전기공사 하도급

1) 피고 회사는 2018. 8. 1. 원고에게 이 사건 증축공사 중 전기공사를 공사대금8,250만원(부가가치세 포함), 공사기간 2018. 10. 15.까지로 정하여 하도급하였다(위하도급계약을 '제1차 하도급계약'이라 한다).

2) 피고 회사는 2018년 10월경 원고에게 위 F요양병원의 본관 보수공사 및 추가공사(전기공사)를 공사대금 22,443,300원(부가가치세 포함)에 하도급하였다(위 하도급계약을 '제2차

하도급계약'이라 한다).

3) 이후 원고는 위 각 하도급계약에 따른 공사를 모두 완료하였으나, 피고 회사로 부터 제1차 하도급계약과 관련하여 27,500,000원, 제2차 하도급계약과 관련하여 22,443,30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라. 원고의 피고 회사에 대한 대여

원고는 2018. 8. 31. 피고 회사에게 1,000만 원을 대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나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피고 회사에 대한 청구에 관하여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합계 59,943,300원(= 제1차 하도급계약의 미지급 공사대금 27,500,000원 + 제2차 하도급계약의 미지급 공사대금 22,433,300원 + 대여금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부분 송달일 다음날인 2019. 10.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재단에 대한 청구에 관하여

1) 원고의 주장

피고 재단은 2018. 10.경 원고에 대하여 피고 회사의 원고에 대한 제2차 하도급계약에 따른 공사대금지급채무를 보증하였다.

2) 판단

증인 G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족, ① 피고 회사의 현장소장이었던 증인 G은 "피고 재단이 공사가 진행되면 공사대금을 피고 회사에게 주겠다는 취지로 이야기한 것이고, 피고 재단이 하도급업체에게 주겠다는 이야기를 한 적은 없다. 피고 재단이 직접

원고에게 제2차 하도급계약에 대한 공사대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구두약정에 관하여는 잘 모른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② 피고 재단이 원고에 대하여 제2차 하도급계약에 따른 공사대금지급채무를 보증하였다고 볼 아무런 객관적인 서류가 없는 점(원고 역시 구두약정하였다고 주장할뿐이다) 등을 종합하면, 원고의 위 주장사실에 일부 부합하는 듯한 갑 제4호증의 기재는 믿지 아니하고,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 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회사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피고 재단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강민